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3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8. 27.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4. 08. 27.
다. 상정·의결일자 : 2024. 09. 10. 산업경제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과장 최정란)

가.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제명 변경

(현행) 고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개정) 고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2)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목적” 규정에 문구 추가(안 제1조)

-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3)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안 제2조·제3조)

4)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추가함(안 제4조)

5)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과 지역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곳은 제외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6) 법령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매년에서 3년마다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인지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

7) 법령에서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에 대해 문장 재정비
(안 제12조)

8)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여부, 종류 및 설치수 추가(별지 제1호서식)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 성별영향평가[복지지원과-23889(2024. 06. 14.) 호]

조례안	수정안(검토의견)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해당조항: 제4조, 제7조	<input type="checkbox"/> 공중화장실의 안전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에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제7조(관리인의 교육)제1항에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할 것을 제안함	<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내용을 추가함(안 제4조) ▪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신설함(안 제7조) ▪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 반영

4) 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977호

가) 예고기간: 2024. 05. 30. ~ 2024. 06. 19.(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 범죄 예방 등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

- (제명) 상위법령의 취지와 부합되도록 제명을 변경(공중화장실 → 공중화장실 등)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 명시된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 ~ 제3조)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지역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시설 등을 각각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인지 교육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안 별지 제1호)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4. 9. 10.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